

# 환 | 경 | 법 | 규

환경부 공고 제2009-264호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009년 8월 21일 / 환경부장관

### 1. 개정이유

생산자책임제(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대상 필름류 포장재와 혼합 배출되는 비대상 필름류 포장재(폐기물부담금 대상) 중 그 양이 많고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을 재활용의무 대상(EPR)으로 전환하여 재활용가능 자원의 순환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의 분리배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 하는 등 EPR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폐기물부담금 대상 중 일부 필름류 포장재를 재활용의무 대상으로 전환
- 나. 자율안전제도 도입에 따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개정내용 반영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nr.go.kr](http://www.menr.go.kr), 법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21705호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9년 8월 25일

현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중 다이옥신을 함유한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폐촉매, 폐흡착제 등은 이를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이옥신 함유폐기물로 분류되어 그 재활용에 제한을 받는 등 기업에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거나 포집된 폐촉매, 폐흡착제 등만 다이옥신 함유폐기물로 분류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위탁)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이옥신 함유폐기물(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발생하거나 포집된 것만 해당한다)

가. 분진

나. 폐촉매

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라. 폐수처리 오니 및 공정 오니

마.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바.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만 해당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 환 | 경 | 법 | 규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공고 제2009-274호

###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09년 8월 28일 / 환경부장관

#### 1. 개정이유

규제 합리화 계획에 따라 동일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체 운반·처리 토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조건을 완화하고, 공공하수도의 재질기준을 주철, 콘크리트 등과 유사한 강도를 가진 신소재의 사용도 가능하도록 하여 신소재의 개발·보급을 통한 국내 기술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면제 조건 완화(안 제26조)

-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조건으로 오수의 운반·처리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동일한 사업장에서 외부의 반출없이 자기의 오수처리시설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함.
- (2)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체 운반·처리할 수 있도록 함.
- (3) 동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자체 운반·처리하게 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됨.

##### 나. 공공하수도의 구조에 관한 기술적 기준 완화(안 별표 5)

- (1) 공공하수도의 재질기준을 주철제 또는 콘크리트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질선정시 법령에 언급된 재질외의 신소재 사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남
- (2) 공공하수도의 재질기준을 주철, 콘크리트 등과 유사한 강도를 가진 신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명확히 함.
- (3) 공공하수도 지자재의 재질을 주철제, 콘크리트 외 신소재 등으로 다양화함에 따라 하수도 기자재 기술발전에 기여

#### 3. 의견 제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하수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하수과(전화 : 02-2110-6881 또는 6886, FAX : 02-507-2450, 전자우편 : min5555@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필요사항